[별지 제11호 서식]('97.4.19. 개정)

상속세(증여세) 연부연납 허가 신청서

처리기간
7 일

신청인	① 성 명		② 주민등록번호	
	③ 주 소		(☎ :)	

④ 결정통지 년 월 일	. . .	⑤ 총납부 세 액		⑥ 최초납부 세 액		⑦ 연부연납신청 금액 (⑤-⑥)	

분 납 회 수 및 금 액 의 내 용

⑧ 납 부 예정일자	1 회	2 회	3 회	4 회	5 회	6 회	7 회
	. . .	. . .	. . .	. . .	. . .	. . .	. . .
⑨ 납 부 예정금액							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등 기 승 낙 서

년 월 일 상속세(증여세)납세담보제공서에 표시된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 담보의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승낙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세 무 서 장 귀하

수 수 료
없 음

* 구비서류

1. 유가증권인 경우 공탁영수증
2. 토지·건물인 경우 등기부등본 1부.
3. 은행의 지급보증서 1부.

* 작성방법

1. ⑥란에는 상속세(증여세)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상속세(증여세)액을 기재합니다.
2. 분납기간은 ④란의 결정통지일부터 3년(가업상속의 경우는 5년, 가업상속재산이 총상속재산의 50%이상인 경우에는 7년) 이내로 합니다.

22226-76011민
1997.2.25.승인

210㎜ × 297㎜
(신문용지 54g/㎡)